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8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“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”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에코·에너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신설)
- 나. 에코·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에너지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 조치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: 2023. 7. ~ 2023. 8. (20일 이상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“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”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- 1) 에코·에너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신설)
 - 설치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센터의 수행 업무를 명시함
- 2) 에코·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 신설)
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※ 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 추진현황

-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(국토교통부)으로 선정되어, 금하마을 에코·에너지 센터 건립공사 中('23.11월 준공 예정)
- 지역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 지원조직 운영 필요
- 건립공사 추진현황
 - 소재지 : 금천구 금하로1다길 12 (독산동 1118-7)
 - 건축비 : 3,797백만원(국 1,279 / 시 2,318 / 구 200)
 - 규 모 : 지상 5층, 연면적 478.95m²(대지면적 342.5m²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관계법령

□ 「에너지법」

[시행 2023. 4. 19.] [법률 제19000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.]